

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6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11. 21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1994. 5. 28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, 기타 현행규정 및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조경제외 건축물 신설
 - 대지의 염분함유 등 조경이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
- 조경예탁금을 조경공사비 200%에서 100%로 완화
- 지역 지구내 건축제한 규정 일부 완화
 - 전용주거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 허용
 - 일반 주거지역내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
 - 공업지역내 판매시설 등 허용
 - 자연녹지지역내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허용
- 건축위원회 위원을 11인 이상 19인 이내에서 11인 이상 50인 이하로 변경
-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
 - 사전결정대상 건축물로서 사전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삭제

3. 관계법령

-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

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제1항 중 “11인 이상 19인 이내”를 “11인 이상 50인 이하”로 한다.

제 6 조 제3항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18조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수목생육에 지장이 초래되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경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

제20조 제1항 중 “금액의 2배를”를 “금액으로” 한다.

제32조 본문 단서 중 “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”를 삭제한다.

제48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”를 각각 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(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9조 제1항 제1호 중 “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”를 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(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)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도표의 “판매시설, 숙박시설, 관람집회시설, 전시시설” 중 주거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용 도.	지 역 구 분	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			
		2천제곱미터 미만		2천제곱미터 이상	
		외벽의 각 부분 (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)	치 마 끝	외벽의 각 부분 (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)	치 마 끝
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	전 용 일 반 주 거 지 역	4	3	6	5
	준주거지역	3	2	4	3

제5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.

[별표 3]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자동차 관련시설(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)

[별표 4] 제1호 차목 중 “주유소 및 충전소”를 “주유소,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, 석유 및 가스판매소”로 한다.

[별표 10] 제1호 다목 중 “기술계학원”을 “기술계학원,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”로 하고, 동호 “라목 내지 아목”을 각각 “마목 내지 자목”으로 하며,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판매시설(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

[별표 11] 제1호 “아목 내지 파목”을 각각 “자목 내지 하목”으로 하고,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판매시설(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.)

[별표 12] 제1호 마목 중 “직업훈련소”를 “직업훈련소,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”로 하고, 동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. 판매시설(농, 축, 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

[별표 15] 제1호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. 관람집회시설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.

사하구건축조례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4조(구성)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<u>11인 이상 19인 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~④ 생략</p> <p>제6조(회의)</p> <p>①~② 생략</p> <p>③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서 “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6. 생략</p> <p><u>7. 사전 결정대상 건축물로서 사전 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~9. 생략</p> <p>④ 생략</p> <p>제18조(대지안의 조경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~5. 생략</p>	<p>제4조(구성)</p> <p>①<u>11인 이상 50인 이하</u>의.....</p> <p>②~④ 현행과 같음</p> <p>제6조(회의)</p> <p>①~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</p> <p>1.~6. 현행과 같음</p> <p>7. 삭제</p> <p>8.~9. 현행과 같음</p> <p>④ 현행과 같음</p> <p>제18조(대지안의 조경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</p> <p>1.~5. 현행과 같음</p>

현행	개정 (안)
<p>3. 특정 열시공기자재의 설치, 배관 및 세관에 대하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로 한다.</p>	<p>3.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</p>
<p>②~⑤ 생략</p>	<p>②~⑤ 현행과 같음</p>
<p>[별표 3]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1호 관련) 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.~마. 생략 (신 설)</p>	<p>[별표 3] 1. 가.~마. 현행과 같음 <u>바. 자동차 관련시설(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)</u></p>
<p>[별표 4]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2호 관련) 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.~자. 생략 차.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<u>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.</u>) 카.~너. 생략</p>	<p>[별표 4] 1. 가.~자. 현행과 같음 차.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<u>주유소, 액화석유가스 충전소,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.</u>) 카.~너. 현행과 같음</p>

현행	개정 (안)
<p>[별표 10]</p> <p>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8호 관련)</p> <p>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</p> <p>가.~나. 생략</p> <p>다. <u>교육연구시설(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)</u></p> <p>(신 설)</p> <p>라. <u>군사시설</u></p> <p>마. <u>기숙사(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)</u></p> <p>바. <u>의료시설</u></p> <p>사. <u>전시시설(산업전시장, 박람회장에 한한다)</u></p> <p>아. <u>방송, 통신시설</u></p>	<p>[별표 10]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</p> <p>.....</p> <p>가.~나.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다. <u>교육연구시설(기술계학원,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)</u></p> <p>라. <u>판매시설(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.)</u></p> <p>마. <u>군사시설</u></p> <p>바. <u>기숙사(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)</u></p> <p>사. <u>의료시설</u></p> <p>아. <u>전시시설(산업전시장, 박람회장에 한한다)</u></p> <p>자. <u>방송, 통신시설</u></p>
<p>[별표 11]</p> <p>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9호 관련)</p> <p>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</p> <p>가.~사. 생략</p>	<p>[별표 11]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</p> <p>.....</p> <p>가.~사. <u>현행과 같음</u></p>

현행	개정 (안)
<p>(신 설)</p> <p>아. <u>방송, 통신시설</u></p> <p>자. <u>군사시설</u></p> <p>차. <u>교정시설</u></p> <p>카. <u>청소년수련시설</u></p> <p>타. <u>동물관련시설</u></p> <p>파. <u>의료시설</u></p> <p>[별표 12]</p> <p>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10호 관련)</p> <p>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</p> <p>가.~라. 생략</p> <p>마. 교육연구시설(국민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교육원, 기술계학원, <u>직업훈련소</u> 및 도서관에 한한다)</p> <p>바.~아. 생략</p> <p>자. 판매시설(<u>농·축·수산물 판매시설</u>에 한한다)</p> <p>차.~버. 생략</p>	<p>아. <u>판매시설(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</u></p> <p>자. <u>방송, 통신시설</u></p> <p>차. <u>군사시설</u></p> <p>카. <u>교정시설</u></p> <p>타. <u>청소년수련시설</u></p> <p>파. <u>동물관련시설</u></p> <p>하. <u>의료시설</u></p> <p>[별표 12]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</p> <p>.....</p> <p>가.~라. 현행과 같음</p> <p>마. 교육연구시설(국민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교육원, 기술계학원, <u>직업훈련소,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</u>)</p> <p>바.~아. 현행과 같음</p> <p>자. 판매시설(<u>농·축·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</u>)</p> <p>차.~버. 현행과 같음</p>

현행	개정 (안)
<p>[별표 15]</p> <p>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13호 관련)</p> <p>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</p> <p>가.~바. 생략</p> <p>사. <u>관람집회시설 중 관람장</u></p> <p>아.~하. 생략</p>	<p>[별표 15]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</p> <p>.....</p> <p>가.~바.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사. <u>관람집회시설</u></p> <p>아.~하. <u>현행과 같음</u></p>